

전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가단3491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한명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7. 1. 13.

판결 선고2017. 2. 3.

주 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57,300원 및 그 중 20,256,00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57,316,863원 중 20,757,300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 A은 소외 E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2010. 6. 1. 신용보증계약(보증기간 만료일 : 2015. 5. 30.)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는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피고 A이 위 E조합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8. 19. 위 E조합에 20,256,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64,100원, 비용은 437,200원이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의제자백)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20,757,300원(= 20,256,000원 + 64,100원 + 437,2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20,256,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인 2015. 8.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6. 12. 7.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 A은 원고와의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5. 5. 30.경까지도 위 E조합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피고 A의 처인 피고 B는 2015. 6. 12. 피고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748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3) 그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F이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27. 매각대금 중 57,316,863원을 피고 C에게 배당하였다.
- 4)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553호로 피고 C의 위 배당금출급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6. 7. 1.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위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 B가 그 보증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위 E조합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후인 2015. 8. 19. 원고가 위 E조합에 대위변제를 하게 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 2) 사해행위의 성립 무릇,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B가 자신의 실질적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가 사해행위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분배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되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고 C도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C이 배당받은 57,316,86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757,300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용균

별지